

[2014 건축사예비시리즈 건축법규] 2차 정오표 [2014. 4. 21]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32	본문표	<table border="1"> <tr> <td rowspan="3">4. 제2종 근린생활시설</td> <td>⑤ ~</td> <td>바닥면적의 합계 500m² 미만인 것</td> </tr> <tr> <td>⑧ <u>최소년</u> 게임제공업소, ~</td> <td>바닥면적의 합계 500m² 미만인 것</td> </tr> <tr> <td>⑬ <u>다중생활시설 중</u> 고시원~</td> <td></td> </tr> </table> <p>※ 빨간색으로 기입한 것이 수정되는 사항입니다.</p>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	바닥면적의 합계 500m ² 미만인 것	⑧ <u>최소년</u> 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 500m ² 미만인 것	⑬ <u>다중생활시설 중</u> 고시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	바닥면적의 합계 500m ² 미만인 것								
	⑧ <u>최소년</u> 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 500m ² 미만인 것								
	⑬ <u>다중생활시설 중</u> 고시원~									
34	본문표	15. 숙박시설 ③ 고시원	15. 숙박시설 ③ <u>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u>							
91	본문 상단표	<u>절차란 하단에 있는 단서는 삭제</u>								
195	본문표	(4) 배연설비 설치 (건축물의 용도에서 네 번째) • 고시원(2종 근린생활시설)	(4) 배연설비 설치 (건축물의 용도에서 네 번째) • <u>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²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와 다중생활시설</u>							
204	상단표 내용추가	2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출구 방향 (제한용도) • 문화 ~ • 종교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출구 방향 (제한용도) • 문화 ~ • <u>제2종 근린생활 중 300m²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u> • 종교시설							
210	두 번째 표	②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대상 (건축물의 용도) 1. • 문화 및 ~ • 종교시설 • 장례식장 • 유흥주점 2. (하단에 있는) • 장례식장	②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대상 (건축물의 용도) 1. • 문화 및 ~ • <u>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²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u> • 종교시설 • 장례식장 • 유흥주점 2. (하단에 있는) • <u>장례식장(삭제)</u>							
211	하단표 추가	② 옥외파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 1. 공연장	② 옥외파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 1. <u>공연장(300m² 이상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포함)</u>							
219	하단표 추가	(1)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대상 건축물)	(1)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대상 건축물) <u>10.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²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u>							
223	하단표 추가	(2) 옥상광장의 설치대상 (용도) • 문화 및 ~ • 종교시설 ~	(2) 옥상광장의 설치대상 (용도) • 문화 및 ~ • <u>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m²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u> • 종교시설 ~							
234	표내용 추가	①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①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u>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²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u> • 종교시설 ~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244	표내용 수정&추가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의 용도</th> </tr> <tr> <td>1</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제외) 종교시설 ~ </td> </tr> <tr> <td>2</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시원(2종근린생활시설 중) </td> </tr> </table>	건축물의 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제외) 종교시설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시원(2종근린생활시설 중)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의 용도</th> </tr> <tr> <td>1</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제외) <u>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²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u> 종교시설 ~ </td> </tr> <tr> <td>2</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다중생활시설</u>(2종근린생활시설 중) </td> </tr> </table>	건축물의 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제외) <u>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²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u> 종교시설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다중생활시설</u>(2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물의 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제외) 종교시설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시원(2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물의 용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제외) <u>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m²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u> 종교시설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다중생활시설</u>(2종근린생활시설 중) 														
318	상단표 수정	6. 방송 수신설비의 ~ 방송통신위원회가 ~ 따른다.	6. 방송 수신설비의 ~ <u>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u> ~ 따른다.												
332	본문표 부분삭제	1. 승강장 <u>⑦, ⑨번 삭제</u> <u>⑧ → ⑦번으로 변경</u>													
349	20번문제 보기	㉔ 승강자의 바닥은 1/1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한다.	㉔ <u>승강장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당 6m²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u>												
417	3번문제	3. 도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3. 도시~ <u>옳은</u> 것은 어느 것인가?												
	정답	㉔	㉔												
505	본문내용	1. 건축사 건축사란 ~ 공사감리의 ~ 자이다.	1. 건축사 건축사란 ~ 공사감리 <u>등</u> 의 ~ 자이다.												
	하단표	(1) 정의 대상자 :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2. ~ 3. ~	(1) 정의 대상자 : <u>1. 삭제</u> 1. 실무수련을 ~ 2. 「국가기술자격법」 ~												
533	3번문제 해설	•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u>•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삭제)</u>												
543	내용추가	(2) 주택의 규모제한 (하단) <u>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이란~</u> <u>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영2조의3)</u> <u>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u> <u>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m² 이상일 것</u> <u>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u> <u>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u> <u>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u> <u>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u>													
546	핵심PLUS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u>■ 혼합주택단지</u> <u>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u> <u>■ 리모델링 기본계획</u> <u>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u> 													
	하단표 수정	9. 리모델링 • 기존세대수의 1/10 이내의 세대수 증가(수직증축 불가)	9. 리모델링 • <u>기존 세대수 15/100 이내의 세대수 증축</u>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566	5번문제	5. 주택법령에 ~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5. 주택법령에 ~ 단독 주택의 세대수는?	
	6번문제	6. 주택법상 ~ 세대수의 최저기준은?	6. 주택법상 ~ 중 아파트 세대수의 최저기준은?	
572	1번문제 해설	조합의 종류	조합의 종류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	1.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	2.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	3. 리모델링주택조합		
589	3번문제 보기	㉔ 공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㉔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592	11번문제 보기	㉔ 세대 당 주거면적 3/10 이내일 것 ㉔ 공용부분에 ~ 규모제한에 ~ 것	㉔ 증축의 규모는 세대 당 주거면적 3/10 이내일 것 ㉔ 공용부분에 ~ ㉔항의 규모제한에 ~ 것	
	11번해설	세대수 증가는 수평방향 또는 별동으로의 증축만 가능하다.	기존 세대수 15/100 이내에서의 증축이 가능하다.	
651	8번문제 해설	예외 :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부터	예외 :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분위	

【※ 위의 내용 이외의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셨다면 www.inup.co.kr 건축사예비시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건축사예비시리즈 건축법규】 1차 정오표 [2014.2.10]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43	표	9. 허가권자가 인정한 창의적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연립주택 제외)	9. 허가권자가 인정한 창의적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u>아파트제외</u>)				
44	표	가. 공동주택 ㄱ. 높이, 층수, 층별 세대수	가. 공동주택 <u>ㄱ. 높이, 층수, 세대수</u>				
57	해설 및 정답 해설 16	② 높이, 층수, 층별 세대수	<u>② 높이, 층수, 세대수</u>				
96	추가	(4) 규제의 재검토 <u>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217	(2) 설치기준 추가	<u>9.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일 것</u> <u>10.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피난안전구역 윗층 재실자수×0.5)×0.28m² 이상 일 것</u>					
396	3) 시가화유보기간	① 5년이상 20년이하의 기간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① 5년이상 20년이하의 기간으로 <u>지정권자가</u>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404	(3) 의견청취 [표]	<table border="1"><tr><td>시·도지사</td></tr><tr><td>시장·군수</td></tr></table>	시·도지사	시장·군수	<table border="1"><tr><td><u>1. 시·도지사 공동수립</u></td></tr><tr><td><u>2. 시장·군수 공동수립</u></td></tr></table>	<u>1. 시·도지사 공동수립</u>	<u>2. 시장·군수 공동수립</u>
	시·도지사						
시장·군수							
<u>1. 시·도지사 공동수립</u>							
<u>2. 시장·군수 공동수립</u>							
	(1) 승인절차 [표]	<table border="1"><tr><td><u>1. 시장·군수</u></td></tr><tr><td><u>2. 시·도지사</u></td></tr></table>	<u>1. 시장·군수</u>	<u>2. 시·도지사</u>	<table border="1"><tr><td><u>1. 시장·군수 공동수립</u></td></tr><tr><td><u>2. 시·도지사 공동수립</u></td></tr></table>	<u>1. 시장·군수 공동수립</u>	<u>2. 시·도지사 공동수립</u>
<u>1. 시장·군수</u>							
<u>2. 시·도지사</u>							
<u>1. 시장·군수 공동수립</u>							
<u>2. 시·도지사 공동수립</u>							
412	(1) 지형도면의 작성	(2)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상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삭제				
448	문제 58번	㉔ 도시·군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군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함	㉔ <u>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문제 59번 해설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u>지형도면고시에 대한 작성 기한은 규정되지 않는다.</u>				

페이지		교정전	교정후												
505	1. 건축사	건축사란~~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며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다.	건축사란~~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며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다.												
	(1) 정의 [표]	<table border="1"> <tr> <td>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td> </tr> <tr> <td>2.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td> </tr> <tr> <td>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td> </tr> </table>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table border="1"> <tr> <td>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삭제</td> </tr> <tr> <td>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td> </tr> <tr> <td>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td> </tr> </table>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삭제	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삭제															
1.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의 기사(伎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33	3번 해설	<table border="1"> <tr> <td>·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td> <td>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td> </tr> <tr> <td>·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td> <td></td> </tr> <tr> <td>·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td> <td></td> </tr> </table>	·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table border="1"> <tr> <td>·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삭제</td> <td>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td> </tr> <tr> <td>·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td> <td></td> </tr> <tr> <td>·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td> <td></td> </tr> </table>	·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삭제	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삭제	건축사사무소 소속되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72	해설 1	<table border="1"> <tr> <td>지역주택조합</td> <td>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r> <td>직장주택조합</td> <td>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r> <td>리모델링주택조합</td> <td>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able>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table border="1"> <tr> <td>1. 지역주택조합</td> <td>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r> <td>2. 직장주택조합</td> <td>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r> <td>3. 리모델링주택조합</td> <td>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td> </tr> </table>	1.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